

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제 2 호        | 의<br>결<br>사<br>항 |
| 의결 년월일 | 2004. 2. 26. |                  |

##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회조례증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사 천 시 장      |
| 제출년월일 | 2004. 2. 16. |

#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|
| 의안<br>번호 | 2 |
|----------|---|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제출일자  | 2004. 2. . |
| 제 출 자 | 사 천 시 장    |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도시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기술직 간부공무원을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보강하여 심도있는 자문·심의·연구·의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을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함(안 제2조)

## 4. 주요토의과제 : 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2) 입법예고 : 입법예고 대상이 아님

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“각 국 주무과장” 다음에 “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”을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, 지역개발국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담당관 및 각 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</p> | 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, 지역개발국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담당관 및 각 국 주무과장, <u>도시계획업무담당 과장</u>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</p> |

## 관계법령발췌

### 지방자치법

**第15條 (條例)**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. 다만,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.

**第9條 (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)**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 各號와 같다. 다만, 法律에 이와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地方自治團體의 區域,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

가. 管轄區域안 行政區域의 名稱、位置 및 區域의 調整

나. 條例、規則의 制定、改廢 및 그 운영、管理

다. 傘下行政機關의 組織管理

라. 傘下行政機關 및 團體의 指導、監督

마. 소속公務員의 人事、厚生福祉 및 教育

바. 地方稅와 地方稅外收入의 賦課 및 徵收

사. 豫算의 編成、執行 및 會計監査와 財産管理

아. 行政裝備管理, 行政電算化 및 行政管理改善

자. 公有財産管理

차. 戶籍 및 住民登錄管理

카. 地方自治團體가 필요로 하는 각종 調査 및 統計의 작성

2.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

가. 住民福祉에 관한 事業

나. 社會福祉施設의 設置、운영 및 管理

다. 生活困窮者의 보호 및 지원

라. 老人、兒童、心身障礙者、靑少年 및 婦女의 보호와 福祉增進

- 마. 保健診療機關의 設置、운영
- 바. 傳染病 및 기타 疾病의 豫防과 防疫
- 사. 墓地、火葬場 및 納骨堂의 运营、管理
- 아. 公衆接客業所의 衛生改善을 위한 指導
- 자. 淸掃, 汚物의 收去 및 처리
- 차. 地方公企業의 設置 및 运营

### 3. 農林、商工業등 産業振興에 관한 事務

- 가. 小溜池、沕등 農業用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
- 나. 農林、畜、水産物의 生産 및 流通支援
- 다. 農業資材의 管理
- 라. 複合營農의 运营、指導
- 마. 農外所得事業의 육성、指導
- 바. 農家副業의 獎勵
- 사. 公有林管理
- 아. 小規模畜産開發 및 酪農振興事業
- 자. 家畜傳染病 豫防
- 차. 地域産業의 육성、지원
- 카. 消費者保護 및 貯蓄의 獎勵
- 타. 中小企業의 육성
- 파. 地域特化産業의 開發과 육성、지원
- 하. 優秀土産品 開發과 觀光民藝品 開發

### 4. 地域開發 및 住民의 生活環境施設의 設置、管理에 관한 事務

- 가. 地域開發事業
- 나. 地方 土木、建設事業의 施行
- 다. 都市計劃事業의 施行
- 라. 地方道, 市郡道の 新設、改修 및 유지
- 마. 住居生活環境改善의 獎勵 및 지원

- 마. 農村住宅改良 및 聚落構造改善
- 사. 自然保護活動
- 아. 地方1級河川, 地方2級河川 및 小河川의 管理
- 자. 上水道、下水道의 設置 및 管理
- 차. 簡易給水施設의 設置 및 管理
- 카. 道立、郡立 및 都市公園, 綠地등 觀光、休養施設의 設置 및 管理
- 타. 地方軌道事業의 經營
- 파. 駐車場、交通標識등 交通便宜施設의 設置 및 管理
- 하. 災害對策의 수립 및 執行
- 거. 地域經濟의 육성 및 지원

5. 教育、體育、文化、藝術의 振興에 관한 事務

- 가. 幼兒園、幼稚園、初等學校、中學校、高等學校 및 이에 準하는 各種 學校의 設置、운영、指導
- 나. 圖書館、運動場、廣場、體育館、博物館、公演場、美術館、音樂堂 등 公共教育、體育、文化施設의 設置 및 管理
- 다. 地方文化財의 지정、보존 및 管理
- 라. 地方文化、藝術의 振興
- 마. 地方文化、藝術團體의 육성

6. 地域民防衛 및 消防에 관한 事務

- 가. 地域 및 職場民防衛組織(義勇消防隊를 포함한다)의 編成과 운영 및 指導、監督
- 나. 火災豫防 및 消防

**第10條 (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配分基準)**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

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로 配分하는 基準은 다음 各號와 같다. 다만, 第9條第2項第1號의 事務는 各 地方自治團體에 共通된 事務로 한다.

1. 市、道

- 가. 行政處理結果가 2個 이상의 市、郡 및 自治區에 미치는 廣域的 事務
- 나. 市、道單位로 동일한 基準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性質의 事務

다. 地域的 特性을 살리면서 市、道單位로 統一性을 유지할 需要가 있는 事務

라. 國家와 市、郡 및 自治區間의 連絡、調整등의 事務

마. 市、郡 및 自治區가 獨自的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事務

바. 2個 이상의 市、郡 및 自治區가 共同으로 設置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 
規模의 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한 事務

## 2. 市、郡 및 自治區

第1號에서 市、道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事務를 제외한 事務. 다만, 人口  
50萬 이상의 市에 대하여는 道가 처리하는 事務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 
있다.

②第1項의 配分基準에 따른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별 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③市、道와 市、郡 및 自治區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競合하지

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事務가 서로 競合되는 경우에는 市、郡 및 自治區에서  
우선적으로 처리한다.